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1678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10. 24.
판 결 선 고	2017. 11. 28.

주 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7., 2016. 7. 4.[1], 2017. 7. 5.[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갑 제2호증에 의하면, '2016. 7. 5.'의 오기로 보인다.
2) 갑 제4호증에 의하면, '2017. 7. 6.'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redacted]시 [redacted]구 B 지상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9층 건물로서 지하층은 대부분 주차장으로, 지상층은 소매시장, 영화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5. 7. 7., 2016. 7. 5., 2017. 7.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 소정의 '특정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A이 2012. 10. 5.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사망 후 제기된 원고 A 명의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상속인들에 의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나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완공(2005년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단전, 단수 상태이고, 내부에 시설물이 없고 출입이 통제된 상태에 있어 화재의 위험 등이 전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없는데다가 10년 이상 미사용으로 인하여 배관이 부식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저하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고도 영업 또는 임대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출이자와 세금만을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이나 실제 이용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원고들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였고,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과연수별 잔가율인 0.8240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대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를 들어 3배 중과세를 하였다.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기본세인 재산세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대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를 초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원고들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 · 위헌적인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조례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경기도의회는 이 사건 건물의 상황, 원고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 해저자원 · 관광자원 · 수자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2조 제1항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제2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는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은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을 들고 있고, 제2호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들면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다.호),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사.호)을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이 사건 건물이 오랜 기간 단전, 단수되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형식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예외조항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화재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0.8240으로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이 대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배 중과세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거나 원고들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조세평등주의 또는 조세평등의 원칙이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이 조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5헌바18 결정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나)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등에 관한 지방세법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살펴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여 공공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특정부동산의 용도나 규모별로 그 소유자가 상이하게 취급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형마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 규정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점, 공공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함에 있어 특정 용도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공공시설로부터 받는 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 그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위 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액은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산출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점,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형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 규정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반하는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대형건축물임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 따라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세율 감면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경기도의회가 위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자치입법권이 인정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과 조례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그 지역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므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까지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 위임할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2헌바76 결정 등 참조).

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예측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헌법상 자치입법권이 인정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관한 조례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점,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방세 과세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자치입법 작용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조례제정의 재량권을 넓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의 취지와 앞서 본 지방세 과세제도의 탄력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에 따른 세율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헌법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별지1

원고들 목록

1. D
2. E
3. F
4. G
5. H
6. I
7. 망 J의 소송수계인 K
8. L
9. M
10. N
11. O
12. P
13. Q
14. R
15. S
16. T
17. U
18. V
19. W
20. X
21. Y
22. Z
23. AA
24. AB
25. AC
26. AD
27. AE
28. AF
29. AG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30. AH
31. AI
32. AJ
33. AK
34. AL(개명 전 이름: AM)
35. AN
36. AO
37. AP
38. AQ
39. AR
40. AS
41. AT
42. AU
43. AV
44. AW(개명 전 이름: AX)
45. AY
46. AZ
47. BA
48. BB
49. BC
50. BD
51. BE
52. BF
53. BG
54. BH
55. BI
56. BJ
57. 망 BK의 소송수계인 BL
58. BM
59. BN
60. BO
61. BP
62. BQ
63. BR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64. BS
65. BT
66. BU
67. BV
68. BW
69. BX
70. BY
71. BZ
72. CA
73. CB
74. CC
75. CD
76. CE
77. CF
78. CG
79. CH
80. CI
81. CJ
82. CK
83. CL
84. CM
85. CN
86. CO
87. CP
88. CQ
89. CR
90. CS
91. CT
92. CU
93. CV
94. CW
95. CX
96. CY
97. CZ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98. DA
99. DB
100. DC
101. DD
102. DE
103. DF
104. DG
105. DH
106. DI
107. DJ
108. DK
109. DL
110. DM
111. DN
112. DO(개명 전 이름: DP)
113. DQ
114. DR
115. DS
116. DT
117. DU
118. DV
119. DW
120. DX
121. DY
122. DZ
123. EA
124. EB
125. EC
126. ED
127. EE
128. EF
129. EG
130. EH
131. EI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132. EJ
133. EK
134. EL
135. EM
136. EN
137. EO
138. EP
139. EQ
140. ER
141. ES
142. ET
143. EU
144. EV
145. EW
146. EX
147. EY
148. EZ
149. FA
150. FB
151. FC
152. FD
153. FE
154. FF
155. FG
156. FH(개명 전 이름: FI)
157. FJ
158. FK
159. FL
160. FM
161. FN
162. FO
163. FP
164. FQ
165. FR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166. FS
167. 주식회사 FT
168. FU
169. FV
170. FW
171. FX
172. FY
173. FZ
174. GA
175. GB
176. GC
177. GD
178. GE
179. GF
180. GG
181. GH
182. GI
183. GJ
184. GK
185. GL
186. GM
187. GN
188. GO
189. GP
190. GQ
191. GR
192. GS
193. GT
194. GU
195. GV
196. GW
197. GX
198. GY
199. GZ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200. HA
201. HB
202. HC
203. HD
204. HE
205. HF
206. HG
207. HH
208. HI
209. HJ
210. HK
211. HL
212. HM
213. HN
214. HO
215. HP
216. HQ
217. HR
218. HS
219. HT
220. HU
221. HV
222. HW
223. HX
224. HY
225. HZ
226. IA
227. IB
228. IC
229. ID
230. IE
231. IF
232. IG
233. IH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234. II
235. IJ
236. IK
237. IL
238. IM
239. IN
240. IO
241. IP
242. IQ
243. IR
244. IS
245. IT
246. A
247. IU
248. IV
249. IW
250. IX
251. IY
252. IZ
253. JA
254. 망 JB의 소송수계인 JA
255. JC
256. JD
257. JE
258. JF
259. JG
260. JH
261. JI
262. JJ
263. JK
264. JL
265. JM
266. JN
267. JO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268. JP
269. JQ
270. JR
271. JS
272. JT
273. JU
274. JV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별지2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구분	원고	과세대상 ()	2015.7.7. 부과처분	2016.7.5. 부과처분	2017.7.6. 부과처분	비고
1			496,620	494,770	492,350	
2			41,710	42,590	42,380	
2			41,710	42,590	42,380	
3			41,710	42,590	42,380	
4			41,710	42,590	42,380	
5			41,710	42,590	42,380	
6			41,710	42,590	42,380	
7			40,550	41,400	41,190	소송수계
8			41,710	42,590	42,380	
8			41,710	42,590	42,380	
9			41,710	42,590	42,380	
10			41,710	42,590	42,380	
11			41,710	42,590	42,380	
12			41,710	42,590	42,380	
13			41,710	42,590	42,380	
14			41,710	42,590	42,380	
15			41,710	42,590	42,380	
16			40,820	41,680	41,470	
17			41,710	42,590	42,380	
18			41,710	42,590	42,380	
18			38,710	38,570	38,380	
19			41,710	42,590	42,380	
19			38,420	38,280	38,090	
20			20,430	20,860	20,760	
20			20,430	20,860	20,760	
21			21,270	21,720	20,760	
21			21,270	21,720	20,760	
22			41,710	42,590	42,380	
23			41,710	42,590	42,380	
24			41,710	42,590	42,380	
25			41,710	42,590	42,380	
26			41,710	42,590	2017.5.17. 소유권이전	
27			41,710	42,590	42,380	
28			41,710	42,590	42,380	
29			41,710	42,590	42,380	
30			41,710	42,590	42,380	
31			41,710	42,590	42,380	
32			10,820	41,680	41,470	
32			41,710	42,590	42,380	
33			41,710	42,590	42,3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34			41,710	42,590	42,380	개명
35			41,710	42,590	42,380	
35			41,710	42,590	42,380	
36			41,710	42,590	42,380	
36			41,710	42,590	42,380	
36			36,970	36,840	36,660	
37			81,800	83,510	83,100	
38			81,800	83,510	83,100	
39			81,800	83,510	83,100	
39			81,800	83,510	83,100	
40			81,800	83,510	83,100	
41			50,790	51,850	51,600	
42			118,090	120,570	119,980	
43			118,090	120,570	119,980	
44			62,590	63,900	63,590	개명
45			58,160	59,380	59,090	
46			72,420	73,940	73,580	
47			38,890	39,710	39,510	
48			41,710	42,590	42,380	
49			41,710	42,590	42,380	
49			60,580	60,360	60,060	
50			39,180	40,000	39,810	
51			39,530	40,360	40,160	
52			39,560	40,390	40,190	
52			39,180	40,000	39,810	
53			40,210	41,060	40,860	
54			40,240	41,090	40,890	
55			43,500	44,420	44,200	
56			42,750	43,640	43,430	
57			41,710	42,590	42,380	소송수계
57			41,710	42,590	42,380	소송수계
58			41,710	42,590	42,380	
59			10,820	41,680	41,470	
59			41,650	42,530	42,320	
59			41,710	42,590	42,380	
60			38,420	38,280	38,090	
61			38,420	38,280	38,090	
61			38,420	38,280	38,090	
61			38,220	38,080	37,890	
62			38,420	38,280	38,090	
63			38,420	38,280	38,090	
64			38,420	38,280	38,090	
64			38,420	38,280	38,090	
64			38,710	38,570	38,380	
65			38,420	38,280	38,090	
66			38,420	38,280	38,0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67			38,420	38,280	38,090	
68			38,420	38,280	38,090	
69			38,420	38,280	38,090	
69			38,710	38,570	38,380	
70			38,420	38,280	38,090	
70			38,420	38,280	38,090	
71			38,420	38,280	38,090	
72			38,420	38,280	38,090	
73			38,420	38,280	38,090	
73			38,420	38,280	38,090	
74			38,420	38,280	38,090	
75			38,420	38,280	38,090	
75			38,420	38,280	37,890	
76			38,220	38,080	38,090	
77			38,420	38,280	38,090	
78			38,420	38,280	38,090	
79			38,420	38,280	38,090	
80			38,420	38,280	38,090	
81			38,420	38,280	38,090	
82			38,420	38,280	38,090	
83			38,420	38,280	38,090	
84			38,420	38,280	38,090	
85			60,580	60,360	60,060	
86			60,580	60,360	60,060	
87			60,580	60,360	60,060	
87			61,050	60,830	60,530	
88			60,580	60,360	60,060	
88			68,420	68,160	67,830	
88			39,590	39,440	39,240	
89			60,580	60,360	60,060	
90			60,580	60,360	60,060	
91			60,580	60,360	60,060	
92			60,580	60,360	60,060	
93			60,580	60,360	60,060	
94			60,580	60,360	60,060	
95			60,580	60,360	60,060	
95			61,050	60,830	60,530	
96			60,580	60,360	60,060	
96			61,050	60,830	60,530	
96			61,050	60,830	60,530	
97			60,580	60,360	60,060	
98			35,850	35,720	35,540	
98			38,420	38,280	38,090	
98			38,420	38,280	38,090	
99			36,520	36,390	36,210	
100			38,550	38,410	38,2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101			38,550	38,410	38,230	
102			35,850	35,720	35,540	
102			57,860	57,640	57,360	
103			36,660	36,520	36,340	
103			36,660	36,520	36,340	
104			34,650	34,520	34,350	
105			35,940	35,810	35,630	
105			39,590	39,440	39,240	
106			43,180	43,020	42,810	
106			39,590	39,440	39,240	
107			36,660	36,520	36,340	
108			40,230	40,080	39,880	
108			38,710	38,570	38,380	
109			47,150	46,980	46,740	
110			47,150	46,980	46,740	
111			38,710	38,570	38,380	
112			38,710	38,570	38,380	개명
112			36,680	36,540	36,360	개명
113			38,710	38,570	38,380	
113			38,710	38,570	38,380	
114			38,710	38,570	38,380	
115			38,710	38,570	38,380	
116			37,380	37,240	37,050	
116			37,350	37,210	37,030	
117			37,760	37,610	37,430	
118			38,710	38,570	38,380	
119			38,710	38,570	38,380	
120			37,760	37,610	37,430	
120			39,590	39,440	39,240	
121			38,710	38,570	38,380	
122			38,710	38,570	38,380	
123			38,710	38,570	38,380	
124			38,710	38,570	38,380	
125			38,710	38,570	38,380	
126			38,710	38,570	38,380	
126			38,710	38,570	38,380	
127			38,710	38,570	38,380	
128			38,710	38,570	38,380	
129			38,710	38,570	38,380	
130			38,710	38,570	38,380	
131			38,710	38,570	38,380	
131			57,860	57,640	57,360	
132			38,710	38,570	38,380	
133			38,710	38,570	38,380	
134			38,710	38,570	38,380	
135			38,710	38,570	38,380	
135			38,710	38,570	38,3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136			38,710	38,570	38,380	
136			38,710	38,570	38,380	
137			37,020	36,870	36,690	
137			38,710	38,570	38,380	
138			38,710	38,570	38,380	
139			37,760	37,610	37,430	
139			38,710	38,570	38,380	
140			38,710	38,570	38,380	
141			38,710	38,570	38,380	
142			38,710	38,570	38,380	
143			38,710	38,570	38,380	
144			38,710	38,570	38,380	
145			38,710	38,570	38,380	
146			38,710	38,570	38,380	
146			38,710	38,570	38,380	
147			38,710	38,570	38,380	
148			38,480	38,340	38,150	
148			39,590	39,440	39,240	
149			38,480	38,340	38,150	
150			38,710	38,570	38,380	
151			38,710	38,570	38,380	
152			38,710	38,570	38,380	
153			61,050	60,830	60,530	
153			38,480	38,340	38,150	
154			61,050	60,830	60,530	
155			61,050	60,830	60,530	
155			61,050	60,830	60,530	
155			45,210	45,050	44,820	
156			61,050	60,830	60,530	개명
157			61,050	60,830	60,530	
158			61,050	60,830	60,530	
159			61,050	60,830	60,530	
160			61,050	60,830	60,530	
161			61,050	60,830	60,530	
162			61,050	60,830	60,530	
163			61,050	60,830	60,530	
164			61,050	60,830	60,530	
165			55,830	55,620	55,350	
166			55,830	55,620	55,350	
167			38,710	38,570	38,380	
168			38,710	38,570	38,380	
169			36,810	36,670	36,490	
170			38,850	38,700	38,5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171			36,810	36,670	36,490	
172			36,810	36,670	36,490	
173			38,580	38,430	38,250	
174			36,950	36,810	36,630	
175			34,910	34,780	34,610	
176			34,910	34,780	34,610	
176			36,950	36,810	36,630	
177			36,950	36,810	36,630	
178			34,910	34,780	34,610	
179			36,970	36,840	36,660	
180			36,950	36,810	36,630	
181			34,940	34,810	34,640	
181			36,950	36,810	36,630	
182			36,950	36,810	36,630	
183			43,520	43,350	43,140	
184			39,790	39,640	39,450	
185			39,640	39,490	39,300	
186			36,680	36,540	36,360	
187			36,980	36,540	36,360	
188			38,710	38,570	38,380	
189			38,710	38,570	38,380	
189			36,680	36,540	36,360	
190			19,350	19,280	19,190	
191			19,350	19,280	19,190	
192			38,710	38,570	38,380	
193			38,710	38,570	38,380	
194			38,510	38,370	38,180	
195			38,710	38,570	38,380	
196			38,710	38,570	38,380	
197			38,710	38,570	38,380	
198			38,710	38,570	38,380	
199			38,710	38,570	38,380	
199			38,710	38,570	38,380	
200			37,760	37,610	37,430	
201			38,710	38,570	38,380	
202			37,760	37,610	37,430	
203			38,710	38,570	38,380	
204			38,710	38,570	38,380	
205			38,710	38,570	38,380	
206			38,710	38,570	38,380	
206			38,710	38,570	38,380	
207			37,210	37,080	36,890	
207			38,710	38,570	38,380	
208			38,710	38,570	38,380	
209			38,710	38,570	38,380	
210			38,510	38,370	38,1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211			38,710	38,570	38,380	
211			38,710	38,570	38,380	
211			38,710	38,570	38,380	
212			38,710	38,570	38,380	
213			38,710	38,570	38,380	
214			38,710	38,570	38,380	
214			38,710	38,570	38,380	
215			38,710	38,570	38,380	
215			38,710	38,570	38,380	
216			38,710	38,570	38,380	
216			38,710	38,570	38,380	
216			38,710	38,570	38,380	
216			38,710	38,570	38,380	
217			38,710	38,570	38,380	
218			38,710	38,570	38,380	
219			38,510	38,370	38,180	
220			38,710	38,570	38,380	
221			38,710	38,570	38,380	
222			38,710	38,570	38,380	
223			38,710	38,570	38,380	
223			38,710	38,570	38,380	
224			38,710	38,570	38,380	
225			38,510	38,370	38,180	
225			93,420	93,060	92,610	
226			38,710	38,570	38,380	
226			38,710	38,570	38,380	
227			38,710	38,570	38,380	
228			61,050	60,830	60,530	
229			61,050	60,830	60,530	
230			61,050	60,830	60,530	
231			61,050	60,830	60,530	
232			61,050	60,830	60,530	
233			61,050	60,830	60,530	
234			61,050	60,830	60,530	
235			61,050	60,830	60,530	
236			61,050	60,830	60,530	
236			61,050	60,830	60,530	
237			57,890	57,670	57,390	
238			55,830	55,620	55,350	
239			57,860	57,640	57,360	
240			76,890	76,600	76,230	
240			39,590	39,440	39,240	
241			38,710	38,570	38,380	
242			38,850	38,700	38,510	
243			36,810	36,670	36,490	
244			38,850	38,700	38,5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245			38,580	38,430	38,250	
246			36,140	36,000		사망 (2012.10.5.)
247			39,590	39,440	39,240	
248			37,690	37,550	37,360	
249			39,590	39,440	39,240	
250			39,590	39,440	39,240	
251			34,910	34,780	34,610	
252			36,950	36,810	36,630	
253			36,950	36,810	36,630	
254			34,910	34,780	34,610	소송수계
255			36,950	36,810	36,630	
256			36,950	36,810	36,630	
257			38,170	38,030	37,840	
257			39,790	39,640	39,450	
258			39,590	39,440	39,240	
259			39,590	39,440	39,240	
259			39,640	39,490	39,300	
260			18,470	18,400	18,310	
261			18,470	18,400	18,310	
262			47,020	46,840	46,620	
263			202,170	201,420	200,430	
264			1,035,830	1,031,970	1,026,910	
265			173,250	172,600	171,760	
266			177,530	176,860	176,000	
267			177,560	176,890	176,030	
268			90,990	90,640	90,200	
269			90,990	90,640	90,200	
270			184,780	184,080	183,190	
271			184,210	183,510	182,620	
272			193,400	192,660	191,730	
273			93,420	93,060	92,610	
274			338,000	336,700	335,080	
합		계	17,839,940	17,913,950	17,745,97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별지3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의 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정한다)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8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끝.